

심사대상 : 시설물

2021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서

국립공원공단



심사위원

성명	서명
김종우	
이종재	

본 심사의 주된 사항은 개별 소관법령에 따라 실시한 기존 안전평가 결과와 각 기관에서 제출한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근거로 진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I

심사 결과 : 종합 3등급

구분	등급
종합등급 (1,000점)	3
① 안전역량 (300점)	3
② 안전수준 (450점)	2
③ 안전성과 (250점)	4

범주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등급
안전역량 [300점]	① 안전역량 등급		300	3
	1. 체계역량	소계	170	C
		① 안전보건경영 리더십	40	D
		②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 및 역량	40	C
		③ 안전보건경영 투자	30	D
		④ 안전관리규정 및 절차·지침	30	C
	⑤ 안전관리 목표 및 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	30	C	
	2. 관리역량	소계	130	C
		① 위험성평가 실시 체계	40	D
		② 근로자 건강 유지·증진 활동 체계	30	C
③ 안전보건교육·안전인식·활동참여		30	C	
④ 재해조사 및 비상상황 대비·대응 능력		30	B	
안전수준 [450점]	② 안전수준 등급		450	2
	1. 시설물	【시설물 안전관리】	450	B
		① 시설물 관리계획 수립 수준	40	A
		② 시설물 안전을 위한 조직의 노력	50	C
		③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50	A
		④ 시설물 유지관리 체계 구축 수준	100	D
		⑤ 시설물 안전성능 수준	60	A
		⑥ 시설물 보수·보강 및 노후화 대비	50	C
		⑦ 시설물 안전 전문성 강화 노력 수준	50	E
⑧ 대국민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관리 수준		50	A	
안전성과 [250점]	③ 안전성과 등급		250	4
	공통	① 안전관리등급 심사결과 개선 조치사항 이력관리	50	A
		② 안전경영책임 활동 및 성과(안전경영책임보고서)	80	B
		③ 안전문화 확산	20	B
		④ 사고사망 감소 성과 및 노력도	100	E

※ 각 지표별 최종 득점 산정 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표기

※등급 구분표(100점 기준 환산점수 적용)

심사항목별 등급	90점대		80점대		70점대		60점대		60점 미만	
	A		B		C		D		E	
안전경영책임보고서 등급	A+	A	B+	B	C	D+	D	E+	E	
	80점	70점	60점	50점	40점	30점	20점	10점	0점	

범주	총 평
안전 역량	<p>기관은 대국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국민행복 실현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어 기관의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경영방침과 실행과제를 수립하였으나, 기관의 임직원,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확보에 대한 실행과제가 누락되어 다소 보완이 필요하다. 안전보건관리조직의 직제를 변경한 점은 긍정적이나, 업무분장의 세부정보 일부가 누락되는 등 다소 미흡하고 안전근로협의체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안전보건경영 예산의 규모와 집행률은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며 안전 업무 수행 인력의 인건비 상승은 긍정적이나, 안전보건 소요예산 편성을 세분화하는 개선활동이 요구된다. 지침과 매뉴얼은 지속적으로 제·개정하고 있으나, 일부 항목이 누락되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적극적인 공유 활동을 권고한다.</p>
안전 수준	<p>【시설물 안전관리】</p> <p>기관은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의 경우 FMS를 활용하고 있으며, 기관 자체시스템인 국립공원 시설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보수·보강 이력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훼손된 탐방로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장기 탐방로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교통약자를 위한 무장애 탐방시설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시설이용자를 위한 안전관리에 노력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다만, 안전점검 후 실시하는 검증체계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검증 대상, 기준, 방법 등에 대한 절차나 지침을 마련할 것을 추천한다. 또한, 시설물 안전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마련하는 등 시설안전 전문인력 교육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p>
안전 성과	<p>기관은 개선권고 과제 전부를 이행 완료하였으나, 검증체계 등 일부 과제는 다소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안전경영을 위한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수립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대국민 안전가치 실현을 위한 맞춤형 탐방 안전 서비스 제공 등의 활동과 임직원 및 수급업체 근로자의 안전문화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 운영은 긍정적이다. 다만,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1명이 발생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 현장 작동성을 확인하였으나, 근본적인 원인 제거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p>

III

범주별 개선사항

○ 안전역량

개선사항
1.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확보에 대한 실행과제 수립 2. 안전보건관리조직의 업무 분장 내 수급업체 적격성 심사 명시 3. 안전보건 소요예산 편성 시 안전보건활동 조사·분석 실시 4. 안전보건관리규정 내 작업지휘자 배치 등 누락 사항 보완 5. 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 시 국립공원 탐방객 관련 목표·전략 포함 6. 유해위험요인 도출 등 개선을 통한 위험성평가의 지속적 수준향상 7. 고객 응대 근로자 적용 대상 명확화 및 교육 실시 개선 8. 각종 제안제도의 참여 범위의 확대를 위한 접근 방법 다양화 및 홍보

○ 안전수준

개선사항
1. 시설물 사고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개선 및 환류 노력 필요 2. 시설물 안전점검, 보수·보강 등에 대한 내·외부 검증 체계 기준 및 절차 마련 3. 노후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 수립과 환류 4. 시설안전 전문 인력 교육의 이행실적 점검과 계획 수립 5. 전문화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 및 로드맵 마련

○ 안전성과

개선사항
1. 근본적인 사고원인 제거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수립 및 실시 필요 2. 안전보건교육 시 교육대상 확대 적용 방안 검토

1 「안전역량」 범주 심사

1. 체계역량
2. 관리역량

1. 체계역량

【1】 안전보건경영 리더십

핵심가치

최고경영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어야 하며,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전 임직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아울러, 안전보건경영방침은 기관의 사업특성과 제반 안전보건 여건을 반영하여야 하며, 전 임직원이 공유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 국립공원공단(이하 기관)의 최고경영자가 면담에 참여하였으며, 경영방침의 핵심가치로서 탄소중립, 국민행복, 상생협력, 윤리경영을 설정하고, 이 중 안전의 핵심가치로서 ‘국민행복’을 설정, 대국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환경 조성으로 국민행복 실현을 목표로 하고있다. 이 핵심가치와 연계하여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설정하고 있으며 5대 실행과제를 설정하고 있다. 다만, 대국민의 안전 확보뿐만 아니라 임직원, 수급업체 등 전사적 안전보건 확보를 목표로 안전보건경영방침의 실행과제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기관의 임직원,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확보에 대한 실행과제가 누락되어 다소 미흡하게 판단된다.

○ 직제규정의 일부 개정을 통하여 안전관리 업무 전담조직을 임원 직속으로 개편함으로써 안전보건 책임경영을 강화하였으며, 기존의 안전관리본부를 폐지하고 이사장 직속으로 탐방안전이사(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고 하부에 일터안전실 및 재난안전처를 두어 안전보건관리조직을 확대 개편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안전조직 역량 지원 수준에 있어서 대상 직원은 위험성평가, 안전교육강사, 공공기관 실무자교육 등 전문성 교육을 완료하도록 지원하였으며, 방역관리사 등 자격증 및 학위 취득 지원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어 안전조직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수준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일반직 4급 이하 안전업무 수행자 전보제한 조치를 실행함으로써 안전조직의 전문성 강화를 도모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판단된다.

○ 최고경영자의 면담을 통해 최고경영자의 수급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으로

서 산안법의 도급관리에 대한 사전 인식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도급업체와의 계약 시 반드시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여 산업재해 발생 시 도급 및 수급업체가 공동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주지시켜 나갈 계획임을 공표함으로써 수급업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 부분이 확인된다. 또한 관련 업체들과의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을 통하여 애로사항 등 충분한 의견 청취 절차를 시행하고 있으며, 대국민 및 고객 등의 경우 안전한 탐방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현장점검 등을 통하여 유해위험요인 도출 및 개선절차를 추진하는 등 기관의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반적인 노력이 확인된다.

○ 다만, 안전보건경영방침의 경우 설정에 대한 의견 청취 등 근거가 부족하다. 또한 사무실 및 회의실에 게시되지 않는 등 전 직원의 공유에 있어 미흡한 점은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개선할 점 요약】

1.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확보에 대한 실행과제 수립

【2】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 및 역량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기관 규모와 사업의 종류에 적합한 안전관리체제를(안전관리조직 구성, 안전관리 업무 총괄 권한 부여 등) 구축하고, 안전관리조직 구성원의 전문성 향상, 동기부여 등 안전관리조직 운영 내실화에 힘써야 한다. 또한, 안전근로협의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등을 법정 기준 이상으로 운영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 기관은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종으로서 본사 기준 24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기특법에 따라 안전 및 보건관리자를 미선임하고 있는 상태로서 산업안전보건법은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의 안전관리는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대행을 맡기고 있으나, 보건관리는 전문기관을 미선임하고 있는 상태로서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고성 사망재해가 1건 발생하였고, 위험성평가 및 도급관리 등의 관련 업무가 증가하고 있어 안전 및 보건관리자의 선임 등 적극적인 안전보건관리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기관은 안전보건관리조직의 설치에 있어서 기존 본부장(1급 직원) 체제에서 임원급(이사)으로 격상하고, 이사장 - 탐방안전이사로 직제의 변경을 추진한 것은 긍정적이다. 다만, 업무 분장의 경우 도급관리 관련 업무 중 수급업체 적격성 심사가 누락되어 있으며, 안전작업허가 지침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안전작업허가제 등의 업무 분장이 누락되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안전보건조직의 역량과 구성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에 있어 담당자 인터뷰, 제도 관련 문서, 규정(인사규정, 인사사무규칙, 직제시행규칙, 근무평정규칙)을 확인한 결과 특별채용 및 근무평정 우대 등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확인할 수 없으나, 안전업무 유공자 이사장 표창(2021년 4명), 안전보건 담당직원 전보인사 시 일터안전실과 사전 협의 절차 마련 등의 일부 노력이 확인된다.

○ 기관은 안전경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에 따라 안전경영위원회를 개최(1회/반기)하였으며, 안전경영위원회에 외부전문가 2명이 참여함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다만, 안전근로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

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운영에 있어 누락(21년 1회만 개최)이 발견되며 안전 검토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의 연계성이 부족한 점은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개선할 점 요약】

1. 안전보건관리조직의 업무 분장 내 수급업체 적격성 심사 명시

【3】 안전보건경영 투자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안전목표 달성을 위해서 충분한 안전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고 적기에 집행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 안전보건경영 투자 예산 및 집행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기관의 안전관련 소요예산 조사활동, 사고사망 예방을 위한 예산편성 적정성 등에 대해 평가하였다. 기관은 안전보건 소요예산 편성에 있어서 위험성평가 등 안전경영책임계획에 따른 안전보건활동을 조사·분석한 실적이 없이, 예산요구서 등의 형태로 수립·취합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 안전보건경영 예산 규모는 기관 전체 예산(2,143억 원) 중 30,368백만 원으로 14.2% 수준이며 전년 대비 9,778백만 원(47%) 상승되는 등 기관 규모를 고려하면 적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계획대비 집행율도 100%로 적정하다. 예산 증가의 원인은 본사 및 사업소, 기타 안전 업무 수행 인력의 인건비가 큰 폭으로 상승되었으며, 이는 안전보건 관련 인력 확충에 대한 기관의 노력 및 의지를 확인할 수 있어 긍정적이다.

○ 다만, 건설공사 발주자 관리 등과 관련된 예산은 편성되어 있으나 일반 도급 관리와 관련된 예산은 확인되지 않으며, 각종 위원회 운영 등의 비용 편성 및 집행, 기타 화재보험, 안전 관련 회비 등의 기타 경비 누락 등 관련 분야에 적합한 예산 편성·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하다.

【개선할 점 요약】

1. 안전보건 소요예산 편성 시 안전보건활동 조사·분석 실시

【4】 안전관리규정 및 절차·지침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안전관련 법령*의 요구사항과 기관의 위험요인 및 작업 특성을 반영하여 안전관리 규정 및 하위 절차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규정 및 절차서·지침 등의 관리를 위한 제·개정 절차 등을 수립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등

심사의견

○ 안전보건관리규칙은 공단 본사, 공원본부 및 사무소·연구원·탐방원·교육원·사무국·팀의 모든 근로자, 사내 도급사업 근로자를 적용범위로 정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보건관리, 안전보건교육, 산업재해발생 시 조치, 보칙으로 구성하고 있다. 작업중지 요청제도 등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전보건 제안제도, 폭염 및 한파 등 기상이변 발생시 조치, 2인1조 작업, 6개월 미만 근로자 단독작업 금지에 대한 사항 등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을 반영하였다. 또한 안전활동 수준평가 및 안전등급제 평가 시의 권고에 따라 작업인원의 적정여부 및 근무기간 6개월 미만의 신규직원의 현장 단독작업 제한, 안전관련 제안제도 신설 등의 사항을 추가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보완하며 개정하고 있다.

○ 다만, 규정의 구성면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작업지휘자 배치 등에 관한 사항, 질병자의 근로 금지 및 취업 제한 등에 관한 사항, 무재해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이 누락되고 있으며,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경영책임보고서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안전경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전근로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임원의 책임에 관한 사항 등이 누락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산안법 개정에 따른 도급사업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조직 구성 등에 관한 사항 등 안전관련 법령의 변경사항을 법규등록부 및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법규준수 평가 등을 통하여 주기적(년 1회)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의 규정에 반영되지 못하여 규정의 최신화면에서 미흡한 점은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 일반작업안전 지침의 제·개정에 있어 공단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운영을 통하여 위험성평가 절차서 등 10개 절차서와 작업장 안전조치 지침서 등 21개 지침서를 제정하고 있으며, 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국립공원 안전작업 Guide-Book, KNPS 업무 유형별 안전(위험회피) 매뉴얼, 공원시설 매뉴얼, 위험성평가 가이드를 작성하고 있다. 지침과 매뉴얼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법규관리 절차(KNPS-SHP-안전-02)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등 10개 안전관련법 및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그 밖의 정책사항 등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제·개정하고 있다.

○ 다만, 지침의 제·개정에 있어 안전관련 법령 및 대내·외 안전환경변화 검토서 등의 작성을 통해 주기적·체계적으로 수행되지 못한 점은 개선의 여지가 있으며, 기관의 업무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고객응대근로자 건강보호 지침, 외부 출장 업무시 사고 예방 지침, 작업 중지 요청제 운영 지침이 누락되고, 작업장 출입 전 필수 안전조치 사항 점검 및 미준수시 퇴거조치 이행 기준, 사무실, 통로 등 사무실내 안전수칙 및 기준, 휴일 또는 야간 등 취약시간대 작업 기준이 없는 점은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추후 위험성평가 등을 통하여 상시 발생하는 유해·위험 작업에 따른 기관에 적합한 지침을 제정하고, 전부서 및 수급업체에 문서안내·안전교육 등을 통하여 전체 근로자에게 공유토록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지침의 공유면에서 공단은 규정과 지침의 제·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각 지사 등 기관의 하부조직까지 사내 인트라넷을 이용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전산망에 접근할 수 없는 수급업체 근로자들과는 안전근로협의체를 통하여 안내하고 있다. 다만, 제·개정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확인하는 활동이 부족한 점과 단발성 수급업체에 대해 해당되는 조항만 발췌하여 제공하는 등의 적극적인 공유 활동이 부족한 점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

【개선할 점 요약】

1. 안전보건관리규정 내 작업지휘자 배치 등 누락 사항 보완

【5】 안전관리 목표 및 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조직·업무 특성, 사고통계현황 등을 반영하여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목표 및 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 최근 5년간 기관의 사고 사망자수(직영, 수급업체, 건설발주) 및 부상자수 현황을 파악하고 최근 3년간 산업재해 0건으로서 ‘안전한 일터 조성으로 중대재해 사고 Zero 유지’로 안전관리목표를 정하고 있다. ‘지속적인 안전경영 점검 및 개선을 통한 안전한 일터 조성, 선제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공원시설 안전관리 강화’라는 추진 전략에 따라 작업장 안전분야, 건설현장 안전분야, 시설물 안전분야, 재난안전 안전분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있으며 기관의 시설·작업뿐만 아니라 건설현장의 안전과 국립공원 구조대운영 등 기관의 위험과 업무특성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

○ 그러나 목표 수립에 있어 사고 사망자와 부상자가 없어 중대재해사고 Zero 유지로 정하고 있는 점은 직원과 수급업체의 안전관리 목표로서는 유효하나, 기관의 특성상 국립공원 탐방객의 사망과 부상을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안전관리 목표에 포함하지 못한 점은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러한 미흡점을 파악하여 ‘21.4월 ‘국립공원공단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통하여 국립공원 안전사고의 현황을 파악·분석하고 탐방객, 직원, 발주사업장을 구분하여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한 활동은 고무적이다. 추후 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시에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여 목표와 전략을 수립토록 권고한다.

○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수립에 있어 공단은 안전경영책임보고서 작성관련 자료 협조 요청 문서를 통하여 각 부서 및 지방사무소의 발주건설현장, 시설물 현황을 파악하고, 본부의 공원시설처 등 관련 부서와 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을 위한 업무협의를 실시하였으나, 회의 시간이 1시간으로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힘들며 전문가 자문 등의 실적이 부족하다. 추후 내실있는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수립을 위해 각 부서 및 사무소의 전년도 발주건설현장 및 시설물 현황과 함께 안전사고 현황(물적피해, 탐방객 사고 포함), 시설 유지·보수 도급현황, 작업 및 기계·기구설비 현황, 사용물질 현황 등을 요구하여 누락없이 파악하고, 위험

성평가 결과, 신고·제안제도를 통해 수집된 정보의 분석결과 등을 활용하여 기관의 위험특성과 위험요인을 파악하는 한편, 회의, 조사·분석, 통계분석 등 목표·전략 수립을 위한 활동을 병행할 것을 권고한다.

○ 안전경영책임계획의 구성면에서 공단은 최근 5년간의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현황, 안전관리 예산·조직, 안전관리 대상 사업장·시설 현황, 전년도 안전경영 활동 실적 및 평가, '21년 안전관리 추진 계획 등 적절히 구성하였으며, 계획의 이행·점검에 있어 세부 추진과제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 및 개선 계획은 수립하지 못하였으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분기별로 실적을 모니터링 하였다.

○ 다만, 세부 추진계획에는 과제의 추진배경, 추진내용, 추진일정은 포함하였으나, 실행력 강화를 위한 각 부서 및 사무소별 조직·지역별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세부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담당부서(담당자), 이행실적 정기점검 및 평가·개선, 환류계획을 포함하지 못하였으며, 계획의 이행점검 결과 추진실적이 미흡한 사항에 대한 개선계획서의 제출·확인 등 부진 사항을 관리함에 있어서 미흡한 점은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개선할 점 요약】

1. 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 시 국립공원 탐방객 관련 목표·전략 포함

2. 관리역량

【1】 위험성평가 실시 체계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안전조치 의무가 있는 직영·도급 사업 및 사업장에 대해 위험성평가 및 이행점검 실시를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적절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위험성평가 실시 절차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정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를 공유하고 안전보건활동에 활용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 기관은 내규인 안전보건관리규칙(2021.9.13. 5차 개정)상 위험성평가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보건경영절차 중 위험성평가절차서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진행하였다. 2021년도 정기평가를 위해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 본사 및 각 사무소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허용불가능 범위의 위험성에 대해 감소대책을 세워 적용하였다. 위험성평가 실시 전 각 사무소별 위험성평가 사업주 및 담당자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본사 주관 위험성평가 담당자를 대상으로 별도 자체교육을 실시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 본사의 경우 각 처, 실별로 위험성평가 담당자를 지정하여 평가팀을 구성하고 처, 실별 유해위험요인을 도출하여 주관부서인 일터안전실에서 취합하였다. 취합된 전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추정 및 결정 과정을 거쳐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에 대해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공문을 통해 구성원에게 전파하였다. 이후 수급업체를 포함한 사내 위험성평가 이행 사항 확인을 합동점검 및 건설발주공사 패트롤점검 등을 통해 확인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1년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신규인정을 전국 8개 사무소에서 취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라 위험성평가 가이드를 작성하여 주요 작업별 위험성평가의 모델을 자체적으로 정리하여 차년도 위험성평가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노력이 확인되었다.

○ 다만, 유해위험요인 도출 시 일부 누락되는 작업이 있거나 각 유해위험요인의 빈도 및 강도의 추정에 있어 절차서의 기준과 맞지 않는 점, 일부 사무소에서 감소대책과 현재 조치사항이 상이한 점, 수급업체 위험성평가의 적정성 검토 및 이행 확인이 담당부서 내에서만 이루어지거나 기록관리가 되지 않는 점 등은 안전

주관부서와의 협업체계를 마련하여 위험성평가의 지속적 수준향상이 필요하다.

【개선할 점 요약】

1. 유해위험요인 도출 등 개선을 통한 위험성평가의 지속적 수준향상

【2】 근로자 건강 유지·증진 활동 체계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근로자의 건강 유지·증진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과 더불어 자율적인 건강증진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고객응대 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감염병(COVID-19 포함)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인프라 및 예방 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 기관은 근로자 건강 유지·증진을 위해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건강진단 조항을 별도 마련하여 이를 근거로 임직원의 건강진단을 법정 주기별로 실시 중이다. 건강진단 활동은 일반건강검진 및 특수건강검진 대상자를 사무직/비사무직, 공정 및 유해인자별로 각각 분류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검진 시기가 도과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건강검진 및 특수건강검진 수검률이 각각 99% 이상으로 기록되고 있다. 다만, 배치전 건강검진에 대한 기록관리 및 계획의 부재, 특수건강검진 이상소견자의 사후관리에 대한 기록관리 및 계획이 미흡한 사항은 보완이 필요한 상태이다.

○ 기관은 근로자 건강 유지·증진을 위해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작업환경 측정을 별도 마련하여 이를 근거로 사업장 내 유해인자를 주기별로 측정 중이다. 작업환경측정은 국립공무원연구센터 6개소에서 실시 중이고 전 공정 노출수준이 노출기준 미만인 것으로 확인되며 일부 비대상 장소를 확인하는 등의 노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작업환경측정결과 전 근로자 참여 제도가 미흡한 점과 작업환경측정결과 환류 받은 사항에 대해 조치사항이 없는 점은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 기관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조치와 관련하여 위기 대응반 구축 및 감염병 위기 대응 행동 지침에 따라 전사적으로 예방 활동을 시행 중이다. 책임부서와 담당자를 지정하고 비말 차단 마스크 지급, 소독제 비치, 출입명부 작성, 예방수칙 게시 등을 조치하고 있으며, 방역관리자 자격증 취득 교육을 시행하여 담당자 전문화 노력도 있어 보인다. 또한, 감염병 유행에 대비한 비상 운영 계획 수립 등의 조치로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조치 또한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와 관련하여 기관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조항을 별도 마련하여 이를 근거로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시행 중이다. 기관의 고객응대 근로자의 보호조치는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및 음성안내를 시행하고 있고, 직원 종합상담 지원 프로그램을 통하여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기관의 고객응대 지침은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제작되었는데 고객응대 업무 직원 보호 필요성이 적시되는 등 목적이 설정되어 있고, 문제 발생 시 상황 대응 조직에 따라 직장 내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있고, 휴게시간 연장 및 행·사법적 조치 지원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는 등 적절하게 마련되어 있다. 지침 이외에 ‘국립공원 고객센터 악성강성민원 처리기준’을 보면 문제 유발 고객의 유형을 분류하고 이에 따른 대응 절차를 만들었으며, 전화응대 시스템을 개선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러한 지침 및 처리기준은 마련되어 있으나 적용 대상 근로자의 범위가 불분명한 것과 교육이 미흡하게 실시된 점은 보완이 필요하다.

○ 근로자 건강 유지·증진과 관련하여 기관은 스트레스 관리 및 근골격계질환 관리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프로그램은 건강관리 취약자들을 위주로 실질적으로 개선 효과가 큰 주제로 선정되었다는 것에 긍정적인 면이 있다. 특히, 스트레스 프로그램은 ‘직원 스트레스 회복 프로그램’ 및 ‘재난종사자 힐링 프로그램’이 있는데, 프로그램 대상자를 선발할 때 스트레스 고위험군 직종 및 전 직원 스트레스 수준 측정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프로그램 시행된 후 스트레스 지수를 측정하는 등 개선 효과를 평가하는 등의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통합으로 관리되는 건강증진 계획이 부재하여 건강증진활동의 목표, 사업주의 의지 표명, 추진체제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 다양한 주제(금주, 절주, 운동, 영양개선 등)의 프로그램이 부재하여 선택의 폭이 좁다는 것은 아쉽다. 향후 통합으로 관리되는 건강증진 계획을 세우는 것을 권고하고 이때 건강 이상소견자에 대한 관리 방안을 포함하는 것 역시 필요해 보인다.

[개선할 점 요약]

1. 고객 응대 근로자 적용 대상 명확화 및 교육 실시 개선

[3] 안전보건교육·안전인식·활동참여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안전 지식 습득 및 실천을 통한 안전보건 인식수준 향상을 위하여 안전보건교육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소속 직원 및 작업장 근로자가 안전을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할 수 있도록 신고·제안·포상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 기관은 최고경영자(이사장)에게 보고하여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계획은 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교육 대상 인원, 시기, 횟수, 방법 등을 포함하여 수립되었다. 이외에도 추가로 위험성 평가, 안전교육강사 양성 전문화, 방역관리사 자격 취득 등의 교육을 시행하여 다양한 안전보건교육 활동을 수행 중이다. 이중 안전교육 양성 전문화 및 방역관리사 자격 취득 교육은 안전보건교육 강사의 능력을 향상하는 목적으로 볼 수 있어 전체적인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점으로 보인다. 또한, 기관 자체적으로 시행되는 safety alarm 제도를 통해 교육 수행 시 적시에 적합한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점은 높이 평가된다. 이 밖에도 안전보건퀴즈 및 안전작업 가이드북 제작, 온라인 교육 시스템 활성화 등 안전보건교육 실시율 및 질적 향상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최고경영자 및 임원의 경우 관리감독자 및 관리책임자의 교육을 이수한 것 이외에 별다른 교육활동이 없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 또한, 근로자의 특별안전교육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최초노무 제공시 교육에 대한 계획 부재와 관리 수준을 파악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역시 아쉽다. 향후 기관에서는 이 점을 보완하여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기관의 관리자와 근로자는 기관의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이해하고 업무에 따른 부서의 안전보건목표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 기관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험성에 대한 인지와 사전점검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직원들의 교육, 훈련에 노력하고 있으며,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기관의 업무 특성에 따라 산악지형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작업의 위험요인과 대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 개인별 차이는 있으나 위험성평가, 안전패트롤, 안전제안제도, 위험상황신고제도 등의 개념과 절차에 대해 전반적으로 잘 알고 있으며, 담당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이에 따른 안전수칙, 개인보호구 지급과 착용, 안전보건교육 내

용 등 기본적인 안전보건관련 내용에 대한 이해도 양호하다. 또한 AED·구급함 등 응급용구와 비상벨·소화기 등 비상용구의 위치 및 사용 숙지상태가 양호하며, 개인별 차이는 있으나 화재, 지진 등 비상사태 시의 절차 및 조치 사항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잘 알고 있다.

○ 다만, 매뉴얼, 규정 및 지침 등 안전관련 사항의 공유에 있어 임직원에 대해서는 게시판이나 내부 문서 등을 통하여 공유되고 수급업체에는 안전패트론티, 화상교육, 현장회의 등을 통하여 안내되고 있으나, 최근 기관내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한 근본원인 및 안전대책에 대한 인식에 있어 미흡함을 보이고 있는 점은 공유체계의 작동성에 있어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사망 등 중대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작업허가제도 및 작업중지 요청제에 대한 개념, 절차 등 전반적인 이해도가 부족하며, 안전제안제도, 위험상황신고제도 등 수급업체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한 활동에 있어 참여도가 낮은 점은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 기관은 안전보건 제안제도의 실행을 위해 안전보건관리규칙 상 근거를 마련하여, 아차사고사례를 발굴하고 안전보건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연중 시행한 안전활동 우수사례에 대해 경연대회를 통해 우수사례에 대해 포상하고 있으며, 아차사고사례 발굴, 안전보건 제안제도 및 경연대회의 성과는 부서 및 개인에 대해 세이프티-포인트를 부여하여 포인트 적립이 우수한 사무소에 대해 포상하였다. 일반시민 대상으로는 기관 홈페이지에 안전신문고를 설치해 위험상황신고, 안전제안 등을 수렴하는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각종 제안제도에 수급업체 근로자의 참여와 안전신문고를 통한 일반시민의 참여가 현저히 낮게 확인되어, 참여 범위의 확대를 위한 접근 방법의 다양화 및 홍보 노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개선할 점 요약】

1. 각종 제안제도의 참여 범위의 확대를 위한 접근 방법 다양화 및 홍보

【4】 재해조사 및 비상상황 대비·대응 능력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사고), 비상상황 등에 대비하기 위한 지침·매뉴얼·절차서 또는 계획 등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 기관은 비상상황 대비·대응을 위해 국립공원 재난안전 매뉴얼 및 지침을 수립 시행중이다. 기관 사업의 특성상 자연재해(태풍, 호우, 강풍, 산불) 및 탐방객 안전사고 등의 상황별 지침을 적절하게 선정하였으며, 단계별 표준행동 요령, 보고 절차, 대응조직, 주요 임무, 연락체계 망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또한, 대내·외 환경 변화, 법령 재개정에 따라 지침 변경관리를 현재까지 꾸준히 하고 있으며, 2021년 본사 포함해 모든 사무소가 자체 재난상황보고 훈련,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 소방대응 훈련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였다. 다만, 훈련의 평가는 결과보고서에 따라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으나, 사용 장비에 대한 평가항목이 부재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 기관은 재해 대응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재해 대응을 시행하고 있다. 기관에서 작성한 안전 상황 보고체계에 따르면 조사 대상, 조사팀 구성, 보고체계, 재발방지대책의 내용 등이 적절히 작성되어 있어 실제로 재해가 발생할 때 재해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이 구체적으로 작성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러한 내용이 최고 경영자에게 보고되는 절차가 구축되어 있고 safety alarm 제도를 통해 기관 근로자들에게 사내 전산망, 공문, 교육 등의 형태로 공유되고 있다. 다만, 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조사표 기록관리 및 계획을 파악할 수 없으며, 재해를 규정하는 데 ‘직원’보다는 근로자, 수급인의 근로자, 노무제공자 등으로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또한 재해의 수준에 따라 외부전문가 등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2 「안전수준」 범주 심사

1. 시설물 안전관리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국토안전관리원)

1. 시설물 안전관리

【1】 시설물 관리계획 수립 수준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시설물 안전 확보를 위한 점검, 보수 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제출의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시설물관리계획(시설물별)의 수립>

○ 기관은 시설물안전법 제6조에 따라 2021년 2월 15일 이전에 시설물안전법 대상 소관 시설물의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였다.

<시설물관리계획(시설물별) 내 안전점검 법정 기한 준수>

○ 기관은 시설물안전법 대상 소관 시설물의 시설물관리계획 수립 시 안전점검의 법정 기한을 준수하여 수립하였다.

<시설물관리계획(총괄) 수립의 적정성>

○ 기관은 총괄 시설물관리계획 수립 시 시설물안전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필수적인 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

[2] 시설물 안전을 위한 조직의 노력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기관의 조직·인사 운영과 목표 설정을 통해 시설물 안전관리 수준이 지속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 기관의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는 공원시설처에서 전담하고 있다. 공원시설처의 생태시설부는 공원시설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며 공원시설물의 조성,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각 국립공원사무소에는 탐방시설과를 운영하여 공원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현장관리, 안전조사·점검·조치 등의 업무를 전담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인사규정 운영>

○ 기관은 공원시설의 품질 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업무담당자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여비, 통신비를 매월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일반직 4급 이하 직원의 전보 시, 자원조사·기술·산업안전·선박 관련 전공 및 업무와 연관배치를 하는 전보기준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소관 시설물의 안전관리 조직인 공원시설처와의 사전 협의 및 배치수요를 우선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전보 인사 시 시설물 안전관리 업무 적격자의 우선 배치 여부와 기관이 시행하는 인센티브는 인사규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운영되는지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시설물 안전관리 담당직원의 사기 진작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인사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할 것을 권고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목표 설정>

○ 기관은 중장기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부성과평가제도를 운영하고 부서별 목표달성을 위한 성과지표를 마련하였다. 본사 일터안전실은 안전사고 감소 실적을 측정하는 ‘산업재해 감소’,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평가 등 목표 실적을 측정하는 ‘안전관리 평가 실적’지표를 관리하고, 사무소는 공원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적을 평가하는 ‘대국민 안전관리 강화’지표를 통해 목표 설정 및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내부 성과평가제도를 통해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공원시설물 안전관리 목표를 설정한 점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목표의 효용성이 높다고 평가된다. 기관은 탐방객 안전사고 감소율을 정부 경영평가 계량지표로 관리하고 있으며, 국립공원 이용객인 국민의 안전사고를 감소하기 위한 노력을 측정하는 지표로 인정된다.

【3】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 기관은 시설물안전법 대상 소관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시설물 안전법 제11조, 제12조에 따라 법정기한 내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시설물안전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적을 보고하여 법적인 의무사항을 준수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

【4】 시설물 유지관리 체계 구축 수준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매뉴얼·설계도서와 같은 유지관리 기초자료 확보, 정보시스템 운영, 사고 발생 대응 및 검증 체계 구축 등 시설물 유지관리 운영체계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관련 업무매뉴얼 보유>

○ 기관은 공원시설공사, 공원시설물, 공중화장실, 다중이용시설, 탐방로, 오수처리시설 등의 유지관리 매뉴얼이 존재하고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업무 전반에 관한 수준은 양호하다. 다중이용시설 설비 유지관리 매뉴얼, 오수처리시설 관리 매뉴얼,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관리사항 등은 규정화한 노력으로 보이며, 해당 내용을 토대로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시설물 설계도서 제출>

○ 기관은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물 전수에 대하여 설계도서를 보유하고 있다.

<시설물 정보 시스템 운영 수준>

○ 기관은 국립공원 전 소관시설에 대한 시설관리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해당 시스템은 관리대상 시설물 5,286개를 포함하고 시설물 현황, 시설물 정보, 준공도면 등 초기자료, 안전점검 결과 등의 정보를 보유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시설물 유지관리에 효용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기관은 시스템 운영의 실적을 캡처본으로 제출하였다. 향후에는 시스템 활용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용실적 마련과 사용자의 설문조사를 통한 개선사항을 시스템에 반영하여 활용도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시설물 사고 발생 대응체계 및 사고 발생 대비 모의훈련 수준>

○ 기관은 대국민이 이용하는 기관 중점 시설의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는 체계와 관련한 제출자료가 없어 관련 수준 확인이 어렵다. 기관에서 소관하는 시설물의 안전사고 발생 등에 즉각 대응하기 위하여 유형별 대응태세, 대응 조직, 비상조직 구성, 초기 행동 조치, 보고체계구축, 개인별 비상시 임무분장 등을 규정한 사고발생 즉각 대응 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한다.

○ 기관은 소방합동훈련, 안전한국 훈련 등을 실시한 실적이 인정된다. 또한, 모의훈련 실시 후 주요훈련 유형별 매뉴얼 또는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개선점을 도출하고 '22년 상반기 중 매뉴얼 및 지침을 마련하겠다는 개선·환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기관에서 수행하는 모든 모의훈련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연초에 수립하는 노력을 병행한다면 모의훈련의 효용성이 증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안전점검 결과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검증체계>

○ 기관은 분기별 공원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각 지역본부 및 사업소 등에 통보하고 있으며 소관 교량시설물에 대한 내부 전문가 합동 및 교차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해당내용은 안전점검을 실시 후 통보하는 내용으로 안전점검 결과 및 보수·보강 공법 등에 대한 검증 체계와는 연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기관에서는 검증체계 구축을 위하여 검증의 대상, 검증 기준 및 방법, 검증결과에 대한 조치방안 등에 대한 절차나 지침 등을 마련하는 것을 추천하며, 검증체계 구축을 통해 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의 적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개선할 점 요약】

1. 시설물 사고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개선 및 환류 노력 필요
2. 시설물 안전점검, 보수·보강 등에 대한 내·외부 검증 체계 기준 및 절차 마련

【5】 시설물 안전성능 수준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성능을 확보하여 시설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소관 시설물 안전등급>

○ 기관 시설물안전법 대상 전 소관 시설물의 안전등급 수준은 양호하게 관리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시설물 관련 무사고>

○ 2021년 한 해 동안 시설물 손상 및 장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또는 국민의 불편을 초래한 사고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향후에도 시설물 유지관리 조직과 체계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면서 시설물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6】 시설물 보수·보강 및 노후화 대비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시설물 점검 등을 통해 발견된 위험요소에 대한 보수·보강을 실시하고, 내구연한 동안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시설물 노후화 대비>

○ 기관이 수립한 국립공원 대피소 단기, 중장기 개선 계획과 국립공원 훼손탐방로 정비계획은 일부 노후화를 대비하기 위한 계획으로 인정된다. 또한, 노후 시설물에 대한 정비 실적을 제출하였지만, 해당 자료로는 노후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공사를 실시하였는지 알기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노후화된 시설물 및 노후화에 대비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인 노후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추천한다.

<보수·보강 이력 관리>

○ 기관은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의 경우, 보수·보강실적을 FMS 시스템에 입력하여 이력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기관 자체 시스템인 국립공원 시설관리시스템을 통해 보수·보강 실적 이력관리를 수행하고 있어 기관은 보수·보강이력 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보수·보강 투자우선순위 의사결정체계>

○ 기관은 국립공원 훼손탐방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각 연차별 정비계획 수립 시 탐방로 훼손등급,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우선정비 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 기준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훼손탐방로 우선순위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다만, 투자우선순위를 정하여 보수·보강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지침 및 매뉴얼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

【개선할 점 요약】

1. 노후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 수립과 환류

[7] 시설물 안전 전문성 강화 노력 수준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시설물의 유지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담 인력의 전문자격 확보 및 전문교육 이수, 전문기술 적용 등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조직 구성원 전문성 강화>

○ 기관의 경우, 정기안전점검과정, 정밀안전진단기술자 보수교육 등 시설물 안전관리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계획을 수립하였다. 다만, 법정 기본 교육 이외의 시설물 관리자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제도는 다소 부족하므로 노력이 필요하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전문성 강화>

○ 기관은 내장산국립공원 솔티교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실적을 제출하였고 도로교량에 대하여 드론을 활용한 점검을 실시하였다. 향후에는 기관의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종합계획 및 로드맵을 수립할 것을 추천한다.

○ 내·외부 전문가 현장기술지원을 위한 통합기술협의체 운영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의 기술지원을 통하여, 현안사항에 대한 품질향상 측면에서 전문성강화의 노력으로 평가된다. 향후 드론 점검을 점차 확대하여 운영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전문기술의 적용 요소를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개선할 점 요약】

1. 시설안전 전문 인력 교육의 이행실적 점검과 계획 수립
2. 전문화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 및 로드맵 마련

【8】 대국민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관리 수준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주요 라이프 라인의 기능을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시설물을 이용하는 국민에게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시설물 회복 및 복원 소요기간 감축>

○ 해당 없음

<시설이용자를 위한 안전관리 개선>

○ 기관은 대국민이 이용하는 소관 시설물인 국립공원에 대한 안전확보를 위하여 여러 가지 활동을 실시하였다. 먼저, 훼손된 탐방로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장기 탐방로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정비를 실시 중이다. 해당 종합계획은 5년 주기로 수립하고 있으며 '21년 4월부터 8월까지 내부 인력 및 외부 위원을 활용하여 611개 노선 약 2,000km에 대하여 실시한 훼손탐방로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훼손등급과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22년부터 '26년까지 5개년 연차별 정비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국립공원에 방문하는 교통약자의 이용편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무장애 탐방시설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이는 국립공원의 방문객 중 교통약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무장애 탐방로를 확대하고, 교통약자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긍정적인 실적으로 판단된다. 기관은 앞선 활동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위험요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발굴된 위험요소를 저감시키기 위한 계획 수립, 활동 실시, 결과를 환류하는 등의 활동을 실시하여 시설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추천한다.

3 「안전성과」 범주 심사

【1】 안전관리등급 심사결과 개선 조치사항 이력관리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전년도 안전관리등급제 심사결과보고서에서 제시한 개선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개선완료 여부와 현장 적용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개선과제 이행 심사>

○ 기관은 총 19건의 개선권고 과제 전부에 대해 이행이 완료된 것이 확인되었다. 기관 담당자는 해당 과제들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전사에 전파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개선과제 이행 노력>

○ 기관은 전년도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안전역량, 안전수준, 안전성과 분야별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러나, 안전수준에서 시설물 점검결과에 대한 검증절차가 마련되지 않았고, 시설물 점검 사각지대 파악에 대한 대응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점은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2] 안전경영책임 활동 및 성과(안전경영책임보고서)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안전경영책임계획 이행 상황에 대한 점검내용, 재해현황 및 다음 연도 주요 계획 등을 안전경영책임보고서로 작성하여 관리함으로써 주요 안전 활동의 지속적인 이행과 발전을 통해 안전경영책임을 정착시켜야 한다.

심사의견

<안전활동 추진 활동·실적의 적정성>

○ 안전경영을 위한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가 적절히 계획 및 수립되어 있으며, 안전경영시스템(KOSHA-MS, ISO 45001)인증을 '21년 5개소에서 '25년까지 31개소 지방 사무소로 확대하여 인증할 것을 계획하고 있어 안전보건 경영에 대한 굳건한 실천 의지와 구체적인 전략도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안전사고 Zero를 목표로 도전적인 정량적 목표도 제시되어 있다.

○ 국립공원 전 사업장으로의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42개 전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를 통해 1,375건의 위험요인을 도출하고 1,373건을 개선하여 약 98%의 개선을 이행하였으며 위험성 평가 우수사업장도 10개를 추가하여 누적 26개 사업장을 유지하고 있다.

○ 내부전문가로 구성된 KNPS 안전패트rollers를 운영하여 23개소의 점검과 29건의 개선이행 등 사업장 및 발주 공사현장의 안전점검 및 안전보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는 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객관성 및 전문성의 추가 확보를 위해서 외부전문가를 포함하는 것을 권고한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화된 안전보건교육을 1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전 사업장으로 확대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거나 도급사나 발주사업의 근로자까지 안전의식이 전파될 수 있도록 좀 더 교육 저변을 넓힐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 안전소식지 Safety-Alarm이나 안전 제안제도인 Safety-Point의 참여형 안전문화 도구를 전 직원 이외에 도급업체나 발주사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하나의 예로 제시될 수 있다.

○ '21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1명이 발생하였고, 작업장의 안전시설 미흡 및

안전관리 부실로 판단되거나 작업일지나 작업지시서 등을 근거로 공정이나 작업지시상의 문제는 없는지 추후 좀 더 면밀한 사고원인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 패트룰 강화 등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수립되어 현장에서 작동되고 있으나, 근본적인 사고원인 제거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수립과 현장에서의 실시 및 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상대적으로 이용객의 야외노출이 많은 국립공원의 특성상 재난취약지구를 지정하여 예방정비하고 재난 예·경보시설을 확충 및 유지관리 활동은 안전 확보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활동이고 매우 중요하나, 안전사고의 방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용객의 안전의식 고취이므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 안전관리 조직 및 예산 집행은 예산대비 97.45%로 양호하게 집행,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탐방·안전이사를 상임임원으로 하는 안전관리 조직의 강화와 안전전담인력 12명의 충원을 통한 안전전문가의 증원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공원시설물의 관리현황은 월악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를 통한 현장방문 확인 결과,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재난취약시설의 정비 및 재난 예·경보시설의 관리도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임원의 안전활동 성과측정>

○ 안전 최우선 경영을 위해 기관장과 임원이 참여하는 탐방로 및 공사현장의 안전활동이 시행되어 총 8회의 상황판단 회의 및 39회의 현장점검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현장에서 발견된 위험요소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임원의 안전 책임의식을 고취하기 안전전담조직의 책임자를 본부장에서 상임이사로 격상하고 안전전담조직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노력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안전경영책임계획 점검결과 및 조치계획의 적정성>

○ 기관의 2021년도 안전경영책임계획과 관련된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지적 및 권고사항이 없었으나 기타 정부부처인 고용노동부 및 기재부 등에서는 안전 조직의 직급 등 위상 강화와 위험성 평가 및 사업장의 교육 강화 등을 지적한 바가 있어 이를 반영하여 안전전담조직의 직급 격상 및 위험성평가 사업주의 교육 확대 등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외부평가기관의 최근 안전평가 결과>

○ 기관은 '21년도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한 안전관리등급제 심사에서 '20년도 종합등급 3등급을 받았고, 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주관한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에서 절대평가 B등급/상대평가 A등급을 받았다.

○ 또한 '20년 6월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과에서 평가한 재난관리평가는 직전 년도의 우수에서 보통으로 격하되었으나 '21년은 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개선 여부는 판단할 수 없다.

○ 향후 여러 외부 평가기관의 안전 평가를 지속해서 받아 연속적인 안전관리의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권고하며 체계적인 점검을 위한 기관 자체의 점검 절차를 마련하는 등 실행력이 담보되는 제도가 구축되길 추천한다.

<대국민 안전가치 실현 노력과 성과>

○ 기관에서는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ICT 기술을 활용한 안전사고 예방, 맞춤형 안전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400여 대의 스마트 위치를 무상대여하여 국립공원 내 3대 사망사고인 심장돌연사, 추락사 그리고 익사 사고의 예방 활동을 시행해 온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또한 수요자 맞춤형 탐방 안전 서비스 제공으로 안전 산행 가이드를 양성하고 탐방객의 밀집도를 낮추어 코로나 확산 방지에도 기여하는 등 안전 가치 실현을 위한 노력도 인정된다.

기관의 2021년도 안전활동 추진내용, 임원 및 조직의 성과관리 및 대국민 안전가치 실현 노력은 타 기관 대비 보통수준이다. 다만,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의 경우 기관 자체의 점검 절차를 마련하는 등 평가를 대비한 노력이 다소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외부기관의 안전평가 결과는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안전경영책임 활동 및 성과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B"로 평가한다.

【개선할 점 요약】

1. 근본적인 사고원인 제거를 위한 구체적인 마련과 실행 필요
2. 안전보건교육 시 교육대상 확대 적용 방안 검토

【3】 안전문화 확산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가치가 기관의 안전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내·외부 전반에 걸쳐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체계적인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계획 및 활동 참여·전개·지원에 있어 공단은 사업장 안전보건활동 참여 활성화 및 현장개선을 위한 ‘Safety-Point 제도’확대 운영 계획을 마련하여 안전보건관리 추진실적 및 각 분야별 안전문화 활동 참여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함으로써 임직원 및 수급업체 근로자의 안전문화 정착 및 활성화에 노력하였다. 기관의 주요사업·사고사망예방 등과 연계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안전보건 우수사례 경연대회 운영’, ‘Safety-Alarm 확대 운영’, ‘국립공원 재난안전극장’을 운영하고, 산악전문가,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안전산행가이드 양성, 국립공원 50+ 안전산행지원단 운영을 통하여 대국민 안전문화 확산과 더불어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다.

○ ‘민간구조협력단 확대 운영’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재난안전관리 실현 및 안전한 산행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산악구조, 안전사고 예방 안내 등 안전한 산행문화 지도·전파 인력에 대한 민간자격을 부여하는 ‘산악전문지도사 민간자격과정’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안전문화 확산 활동을 하였다.

○ 특히, ‘국립공원 재난안전극장’은 언론보도 및 홈페이지·SNS 홍보, 현수막·배너 등을 통하여 관람객을 모집하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하여 재난현장 및 각종 수색·구조현장에서 직원이 겪은 생생한 경험담을 운영자가 스토리텔링을 통해 관람객에게 전달하는 형태로 기존의 단편적 일회성 캠페인 위주의 홍보·교육에서 벗어나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소통하는 새로운 방식의 접근으로서 추후 발표자로서 대국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노력을 추가한다면 더욱 우수한 활동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사업·사고사망예방 등과 연계한 근로자·이해관계자·대국민 안전문화 확산 사례 제출(발표)과 관련하여 공단은 ‘국립공원 안전산행가이드 운영’라는 주제

로 국립공원 안전사고는 99% 무리한 산행 및 불법 산행에 의해 발생한다는 인식하에 대내·외적인 환경분석을 통하여 ‘국립공원 안전산행가이드’를 양성하여 일반 탐방객을 대상으로 가이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국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소득을 창출하는 활동을 실시하였다. 안전산행가이드 전용 예약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회적 경제조직(안전산행가이드 협동조합)을 육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해 노력하였다.

○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탐방객 안전사고를 전년대비 28% 저감하였으며, 추가로 179명, 21백만 원의 일자리 창출과 서식지 보전효과(서식지 복원지수 ‘18년 대비 2점 상승)를 거두었다. 향후 산악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교육과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권역별 가이드 협동조합 설립·육성, 안전산행가이드 양성 교육 및 예약시스템의 민간 이양 등을 계획하고 있어 본 사업의 전문성, 지속성, 대국민 접근성을 강화하는 좋은 시도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다만, 성과 측정 면에서 안전사고 저감 성과와 서식지 보전효과를 측정하고 있으나, 국립공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통계자료로서 제시한 활동만의 성과로 인정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다. 추후 이에 대한 보강과 탐방객 안전교육, 개인 보호구 대여 서비스 등과 연계한 좀 더 정교한 추진 체계를 동반한다면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우수한 사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사고사망 감소 성과 및 노력도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안전활동을 통해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과 관련된 직영·수급업체·건설발주현장 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의 사고사망 예방 등 안전성과를 창출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사고사망 감소 성과>

○ 기관의 사고사망 승인은 평가 대상연도 직전 3년 평균 0명에서, 2021년 1명으로 증가하였다.

<사고사망 감소 노력>

○ 사고원인은 내·외부 조사를 시행함과 더불어 본사 및 사무소의 합동조사를 수행하여 안전보호구 미착용 및 임시가설물의 미설치로 파악하였으나, 해당공사의 작업지시서와 작업일지 등을 통한 공사 진행상의 관리적 원인을 찾는 활동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 사전에 계획했던 패트롤 운영계획이 사고예방을 위해서 적시에 현장에서 작동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고 이후, 모든 현장의 점검과 CCTV 및 스마트폰 앱을 통한 관리가 계획되어 시행중에 있다.